

#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habilitative Education in Prison Library

홍 명 자(Myung-Ja Hong)\*\*

### 목 차

- |                         |                          |
|-------------------------|--------------------------|
| 1. 서 언                  | 3.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          |
| 1. 1 연구목적               | 3. 1 교도소도서관 교화교육의 의의와 효과 |
| 1. 2 연구범위와 방법           | 3. 2 교도소도서관 교화교육의 종류와 내용 |
| 2. 교도소 및 교도소도서관의 의의와 목적 | 3. 2. 1 문자해독 교육          |
| 2. 1 교도소의 의의와 목적        | 3. 2. 2 개방교육             |
| 2. 1. 1 교도소도서관의 의의      | 3. 2. 3 독자적 학습           |
| 2. 1. 2 교도소도서관의 목적      | 3. 2. 4 고등교육             |
| 2. 2 교도소도서관의 의의와 목적     | 4. 결론 및 제언               |
| 2. 2. 1 교도소도서관의 의의      |                          |
| 2. 2. 2 교도소도서관의 목적      |                          |

### 초 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수형자를 격리수용하고 교화교육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하는 교도소가 교화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도소도서관의 활용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교도소의 기본목적이 수형자의 교화교육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도소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도소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화교육내용을 문자해독 교육, 개방교육, 독자적 학습, 고등교육 등으로 나누고,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 ABSTRACTS

This study briefly analysed the situation of rehabilitative education in Korean prisons; examined the purposes of the prison and prison libra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son library and rehabilitative education; and explained the literacy, open learning, self-directed study and higher education provided by the prison library.

키워드: 교도소도서관, 특수도서관, 공공도서관, 교화교육

Prison Library, Special Library, Public Library, Rehabilitative Education

- \* 본 연구는 200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서관학 전공 교수(mjhong@cu.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12월 11일

## 1. 서 언

### 1. 1 연구목적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들은 수형자로서 교도소에 격리·수용되며, 형기의 만료 등 출소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미국의 전 대법원장 Warren Burger는, 교도소가 수형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만 그들을 격리하여 구금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낭비에 불과하다고 피력하였다. 사회복귀를 위하여 종래에는 주로 규칙적인 노동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직업훈련이나 그 밖에 각종 교육의 실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 그 성과를 한층 높이려고 하고 있다.

출소 후에 준법적인 사회인으로 변모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려면 교도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에서 교화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재차 범죄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감기간 중에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출소 후에도 범죄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화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범률이 55%(21,001명)에 달하고 심지어 5범 이상에 해당하는 수형자 수가 4,932명(13%)에 이르러 사

회의 안전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서<sup>1)</sup> 교화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민주교정제도가 확립된 것은 1961년이다. 그 이후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최우선시하는 현대의 교정이념 하에 교도소의 주된 목적이 교육 교화임을 법률상으로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 종교교육 등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2000년에는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교화에 의한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었다. 즉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 수용자의 처우 향상, 사회복귀의 촉진을 목적으로 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단체(주로 종교단체)에 의한 민영교도소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관영이든, 민영이든 교화교육이 교도소운영의 근본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용 자료와 필요한 지원을 하며, 또한 직접, 간접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교도소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수형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또한 생활기술도 낮은 수준이지만, 독서를 통하여 수형자의 삶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증거가 여러 나라에서 밝혀지고 있다.<sup>2)</sup> 수형자에게 적절한 독서를 제공하여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고, 독서를 통하여 그들이 교화될 수 있

1) 법무부 교정국, 2003, 교정관련통계

2) Frances E. Kaiser ed., 1995,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 2nd ed., IFLA Headquarters, 5

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도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교도소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IFLA에서는 국제적 기준<sup>3)</sup>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회원국에게 도서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에서 국가적 기준을 개발할 때 준거로 사용하고 국가적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기준을 직접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영국, 미국과 같은 외국에는 교도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sup>4)</sup>과 기준<sup>5)</sup>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교도소도서관이 교도소의 필수적 시설이며, 또한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화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도소의 교무과에 약간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데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달리, 교도소도서관이 교화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예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도소의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교도소도서관을 설치하여 교화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1. 2 연구범위와 방법

교도소도서관은 일차적으로 수형자의 이용을 위한 시설이지만, 교도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소직원에게 업무수행, 업무개발

에 관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 존재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화교육의 대상인 수형자만을 봉사대상자로 한 교도소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는 소년교도소와 일반교도소로 나뉘어, 전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 만 20세 미만을 수용하고, 후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그리고 미결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수용한다.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 내지 피의자들은 법원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들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특히 법률정보)의 제공이 가장 유익할 것이고,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은 공식적 교육을 받을 연령에 해당하므로 학교 교육에 근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 교육을 받을 연령을 넘은 성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반교도소와는 다른 교육이 소년교도소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반교도소는 성인 수형자를 그 수용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격리되어 구금되는데, 다만 구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교화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교화하는 것이 수형자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인수형자를 수용하는 일반교도소의 교화교육만을 연구대상

3) Kaiser 1995

4) Library Association, 1997, *Guidelines for Prison Libraries*, 2nd ed.

5) ALA,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1992, *Library Standards for Adult Correctional Institutions*

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도 교화를 목적으로 생활지도교육, 정신교육, 학과교육,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은 교도소 자체에서 교화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본 연구는 교도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교화교육에 관한 연구이므로, 교도소도서관이 제재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교화교육활동이 활발한 영국과 미국의 교도소도서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일반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교화교육과 이러한 교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도소도서관이 갖는 역할 등에 대해서만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도소도서관이 수형자에 대해 교화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의의와 효과, 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고, 교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도소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장서, 사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교도소제도와 그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 그리고 담당 정부기관의 web-site 등을 참고로 하였고, 국제기구, 영국과 미국의 교도소도서관제도에 대해서는 발표된 각종 문서와 연구문헌, 그리고 web-site 등을 참고로 하여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사용된 '교화'란 rehabilitation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분

야에서는 '재활'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행형법 상의 용어이며, 교정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교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서도 수감자, 수용자, 재소자 등이 혼용되고 있지만, 행형법상 징역형 등 형이 확정된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교도소에 격리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법적 용어인 '수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교도소 및 교도소도서관의 의의와 목적

### 2.1 교도소의 의의와 목적

#### 2.1.1 교도소의 의의

교도소란 법원이 수형자에게 내린 자유형, 즉 범죄인을 사회생활로부터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시설이다. 즉 교도소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수용시설을 말한다.<sup>7)</sup> 우리나라 행형법 제2조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형자란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유치명령을 받은

6) 남상철, 1997년, 교정의 역사적 궤적과 발전적 전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04-113

7) 김중환 편, 1999, 法律學辭典, 제4 전정판, 법문사, 214-215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근대화된 행형제도가 처음 나타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이며, 그 후 1950년에 행형 내지 교정행정의 기본이 되는 행형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개정법에 의하여 종전의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교유행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현대적 민주행형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형벌에 대한 의미와 목적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여 왔다. 초기에는 응보형주의가 주장되어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 차원에서 과하여지는 것이 형벌이라고 보았지만, 점차 목적형주의 즉 형벌은 범죄인을 개선시켜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목적형주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형주의로 발전되어, 형벌이란 교육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전되었다. 교육형주의를 실천에 옮기려면 범죄의 원인, 범죄인의 성격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교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정환경의 교육화가 요청된다. 수형자의 수용시설의 명칭을 교도소로 바꾼 것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목표로 하는 행형이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교도소의 수용대상자인 수형자는 실정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인들이다. 범죄인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 즉 개인의 도덕적 결함과 반사회적 성격이 원인이라고 보는

학설(The person-centered model),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등의 사회적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학설(The situation-centered model), 그리고 개인의 인지능력 부족(The cognitive behavioral model)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학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학설이 오늘 날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이 학설에 의하면 범죄성은 잘못된 사회적 학습 혹은 부정적 하위문화에의 몰입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기술(능력)의 부족과 왜곡된 인식에 의해서 나타나며, 개인의 인지능력은 학습에 의해 발달될 수 있으므로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범죄인에게 실시하면 미래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교도소에서 인지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범죄성에서 탈피할 수 있으므로 교도소에서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sup>8)</sup>

또한 범죄인의 종류에 대해서도, 국제형사학협회는 순간적(기회적) 범죄인, 소질 또는 교육이나 교화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 적응력이 약화된 범죄인, 합법적인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기대할 수 없는 범죄인으로 나누고, 교정의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개선 가능, 두 번째는 개선 곤란, 세 번째는 개선 불능으로 구분함으로써 교화교육의 필요성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sup>9)</sup> 특히 우발적 범죄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들의 개선을 위한 교육의

8) Tony Stevens, 1995, *The Role of the Prison Library in the Reform and Rehabilitation Process*, Ph.D Thesis, Sheffield University, pp. 59-60

9) 허 주옥, 2002, 『矯正學』, 서울: 법문사, 25

필요성을 시사하는 이론이라고 하겠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수형자에게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아울러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형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수형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주장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이다. 즉 행형이 교도소에서의 단순한 형의 집행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독일의 판례(1972.3.14, 1975.10.29) 역시 “수형자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위험과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나가는 법을 학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재사회화 또는 사회화가 행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았다<sup>10)</sup>. 이 사상은 전통적 행형에서 교화를 이념으로 한 행형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꽃피우게 되었다.

### 2. 1. 2 교도소의 목적

교도소의 기본목적은 수형자를 교화하는 것이다. 교화란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범죄자의 재범이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감소 내지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의 성격이나 능력, 가치관, 행동 등의 변화

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교화프로그램에 의하여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여 법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교화라는 개념은 환자가 수술 후에 기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무리가 없이 일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재활센터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행형에서 rehabilitation 개념을 도입한 것은 범죄자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성격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치료함으로써 실패한 사회적응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행형의 본질적 임무라고 보는 것이다.

교도소에서의 교화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한 국제기구와 전문직단체들은 이에 관한 기준을 만들거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는 1989년 10월 13일에 교도소의 교육과 관련된 기준<sup>11)</sup>을 채택하였는데, 17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교도소의 교화교육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1항에서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의 도서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도 역시 교도소의 교육과 관련된 결의문<sup>12)</sup>을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럽회의의 기준과 유사하다. ACA(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는 2002년에 발표한 문서<sup>13)</sup>에서, 수형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성장 발전의 가능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이 도덕적 시민

10) 허주옥 2002, 100

11)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1989, *Recommendation No. R(89) 12 : Education in Prison*

12)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0, *Resolution : 1990/20*

13) ACA, 2002, *Declaration of Principles*

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화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수형자들이 교화될 수 있으며 결국은 사회에 재 편입되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회의는 활동 보고서에서, 교육은 교도소환경을 정상화시키고 과거에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수감자에게 제 2의 기회를 주며 또한 교육은 수형자에 대한 교화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 수형자에 대한 교화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하였다.<sup>14)</sup> 이밖에도, 교화교육을 통하여 범법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준법적 시민으로 전향되고, 또한 근로의욕을 지닌 건전한 생활인 및 훌륭한 부모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sup>15)</sup>

교화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다. 긍정적 입장에서는 교육이 수형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업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적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능력을 점차 개선하도록 하며, 수감 중 보다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출감 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실제

로, 미국의 연방교정국과 Wisconsin, Ohio, Maryland, Minnesota 등 몇몇 주의 교도소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범율이 비참가자의 재범율보다 낮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취업률은 반대로 교육 참가자의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범율이 작업프로그램 참가자의 재범율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sup>17)</sup>

위와 같은 결과는 교도소의 환경 내지 교육 환경,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운영 등이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나라의 교도소 교육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인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육의 효과를 강조한 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교화교육이 계속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범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도소의 교화목적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sup>18)</sup> 특히 교도소 직원과 수형자 중에도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수형자들은 교육 시설의 이용을 꺼려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 입

14) Council of Europe, 1990, *Final Activity Report on Prison Education*, Strasbourg, Quoted in Stevens 1995, 127

15) Stephen J. Steurer & Linda G. Smith, 2003, *Education Reduces Crime: Three-State Recidivism Study*, Correc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

16) Stevens 1995, 128-129

17) Steurer and Smith 2003, 4-6

18) R. J. Rubin, & S. J. Souza, 1989, "The Challenge Continues: Prison Librarianship in the 1980s", *Library Journal*, 1 March, 47-51

장을 지닌 직원들은 심지어 수형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강의실에 가는 것을 방해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19)</sup> 그리고 1985년에 실시된 교도소 직원의 교화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1%의 직원만이 교화에 성공했다고 본 반면, 49%는 전혀 성공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sup>20)</sup>

교도소의 교화교육에 대한 입장은 수형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리라고 본다. 단기수들은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수감기간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므로 교화교육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수들은 교도소 생활에 적응한 후에는 자신의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 수감기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화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장기수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방심하지 않기 위하여(47%), 출소 후에 대비하기 위하여(38%),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하여(15%) 교화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고, 또한 도서관을 자기학습을 위한 자원(a resource for self-education)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sup>21)</sup>

우리나라의 교정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형자 중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2001년 현재 38,521 명중 9,789 명)에 해당되고 10년 이상(무기징역 포함)이 전체의 9%(3,610 명)에 해당되어 장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또

한 재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5%(21,001 명)로서 초범에 비하여 많으므로 수형자에 대한 교화교육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 제1조와 제1조의 3에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제7장에서는 교육과 교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교도소의 교화교육으로서는 의무교육과 임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즉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교육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행정법 제 32조 제1항) 이 교육은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이 실시되며, 또한 그 밖의 수형자에게는 건전한 인격형성의 촉진, 심신단련,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외부의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3항).

위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는 정신교육과 학과교육을 하며, 또한 기타 교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정신교육은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하여 이들의 비뚤어진 의식구조를 잡아주기 위한 교육으로 일반정신교육을 연 1회, 매회 2주씩 실시하며, 청송 제2교도소에서

19) Stevens 1995, 137

20) Stevens 1995, 22-23

21) Stevens 1995, 167-168



는 특정강력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심성순화를 촉진하고 있다. 학과교육은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학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학력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며, 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 대학교육, 학사고시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각종 검정고시의 합격, 대학입학시험 합격, 각종 자격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수형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정신과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타 교화활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각종 작품전시회와 발표회, 종교지도, 상담강화, 도서열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서열람은 수용생활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범죄악습의 감염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부터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가 아닌 한 열람을 허가하고 독서를 권장하게 됨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 행형법 제 33조(신문, 도서의 열독)에서는 수형자가 자비부담으로 신문이나 도서를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 440호)은 관용도서(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또는 발간하거나 증여 등을 받아 도서관부에 등재한 도서)와 개인도서(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매하였거나 영치된 개인용 도서)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도서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수용자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2001.1.18 법무부령 제502호)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되지 않은 도서를 입수하거나 이를 열람하는 행위(제3조 제31호), 취침시간에 독서, 신문열람, 집필 또는 오락 등으로 다른 수용자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동조 제32호)에 대해서는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및 경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제4조 제1항 제9호). 뿐 만 아니라 수용자가 사회복지에 유익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으며, 집필활동을 할 수도 있다. 행형법시행령 제113조(정서교육)는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운동회, 연극,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형법과 동시행령은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도서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 2. 2 교도소도서관의 의의와 목적

### 2. 2. 1 교도소도서관의 의의

교도소 도서관(prison library)이란 교도소의 직원과 수형자들을 위하여 교도소에 의하여 유지되는 도서관으로서, 일반 관심분야에 관한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및 법률문헌 등이 소장되는 도서관이다.<sup>29)</sup>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조

는 교도소에서 복무, 근무 또는 복역 중인 자에게 학습·교양·조사·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이 특수도서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 설치되어야 할 기본시설로서의 교도소도서관에 관한 명문규정이 행형법이냐 행형법시행령 등에 없다.

수형자에게 읽을거리로서 도서가 처음 주어진 것은 1790년 미국에서이며,<sup>23)</sup> 1842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도서를 구비한 장서가 교도소에 존재하였고 당시에는 주로 종교서적과 도덕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다.<sup>24)</sup> 즉 수형자의 범죄성이 도덕적, 정신적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합한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후 전문직 사서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명실상부한 도서관을 만든 것은 20세기 초 이후였다.<sup>25)</sup> 수형자의 요구에 적합한 도서관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설치를 위한 준비를 1903년에 착수하고 도서관봉사를 위한 사서를 1907년에 임용한 것은 Iowa주에서이다.<sup>26)</sup> 그 후 교정의 기본이념이 교육형주의로 발전하면서 교도소에 많은 도서관이 설치되고 또한 교화교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도소의 교화교육을 지원하고 수형자의 기

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교도소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종 국제기구 및 전문직단체 등에 의한 문서에서 명백히 천명되었다. 먼저, UN은 그 기준<sup>27)</sup>에서 “모든 수형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교도소는 오락용 및 교육용 도서를 적절하게 갖춘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IFLA, ALA, LA 등과 같은 전문직단체들도 전술한 지침 또는 기준에서 수형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도소 내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설치 및 수형자에 대한 도서관봉사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European Prison Rules, 영국의 Prison and Borstal Rules(1964년), The Prison and Young Offender Institution Rules(1988), Prison Rules(1999) 등이 그 예이며, 이러한 법률들은 모든 교도소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교도소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환경이므로 수형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매우 복잡하고 규제가 많으며 자율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형자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면서 휴식과 명상을 취할 수 있는 공

22) Heartsill Young, 1983, “Prison Library”,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77

23) Rubin & Souza 1939, 47

24) Stevens 1995, 59-61

25) Rubin & Souza 1939, 47

26) Margaret Cheeseman, 1978, “Prison(Correctional)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by Allen Kent, vol. 24, 118, Marcel Dekker Inc.,

27) UN, *Standard Minimal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 40조

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도서관의 환경과 분위기는 교도소 내에서 비교적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매력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의 양식을 위한 독서를 하고, 친절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수감생활 중에 필요한 정보 및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취업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도서관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인기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1992년 Rubin은<sup>28)</sup> 교도소도서관의 모델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에서 그는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로서 9종 즉 대중적 독서자료 센터, 독자적 학습 센터, 공식적 교육 지원센터,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 법률정보 센터, 치료프로그램 지원센터, 외부 사회에 관한 정보센터, 개인 피정센터, 직원 연구센터,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센터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원, 재정, 공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는 교도소 도서관이 위에 기술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수형자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교도소도서관을 오락, 정보, 개인적 성장,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등의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sup>29)</sup>

일반 도서관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교도소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와의 직접적 접촉이

쉽지 않다. 도서관 및 도서관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교도소 내의 도서관의 위치와 도서관 및 사서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수형자들이 에스코트를 받지 않고도 도서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또한 사서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서관 봉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이용의 경험이 없는 수형자들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사서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밝히고 또한 요구에 상응한 도움을 받도록 하고, 도서관이용 및 자료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한다면 수형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고 또한 도서관에서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점차 적극적인 도서관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감기간 중의 시간을 보다 창조적으로 사용하고자 원하는 수용자는 열성적 도서관 이용자 될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 밖의 사회인과 비교할 때 수형자들의 도서관 이용율이 10배 정도 높으며, 또한 다양하고 많은 요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sup>30)</sup>

## 2. 2. 2 교도소도서관의 목적

19세기까지는 교도소도서관의 목적이 교도소의 목적과 유사하다고 보아 수형자의 교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도서관의

28) Rhea Joyce Rubin, 1997, *The Planning Process for Wisconsin Institution Libraries*, Oakland: Rubin Consulting, Quoted in Vibeke Lehmann, 1999, *Prison librarians needed: a challenging career for those with the right Professional and human skills*, 65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Bangkok, August 20-28, 3-4

29) A. R. Roberts, 1980, "Library Services and Censorship in Corrections," *Corrections Today* 5 (Winter), 75-84, Quoted in David W. Wilhelmus, 1999, "A new emphasi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5.2 (March), 114-20

30) Rubin and Souza 1989, 49-50

성공적 역할 수행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러나 점차 도서관이 교도소의 이념 내지 교도소 프로그램의 지원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것이 교도소도서관의 기본적 목표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교도소도서관의 역할과 목적이 교도소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도서관이란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수행자들이 휴식하고 수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공공도서관의 본을 뜨는 경향이 커지게 되었다.<sup>31)</sup>

교도소 도서관의 기본적인 존재의의는 '읽을 자유(right to read)'를 보장하는 것이므로,<sup>32)</sup> 교도소의 목적이나 이념이 무엇이든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이 그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수행자의 '읽을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형법 제 2601(c)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수형자는 읽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미국 우체국에 의하여 배달이 허용된 도서, 잡지, 심문, 법률자료 등을 구입하고 입수하며 읽을 수 있고 다른 수용자들도 이를 읽도록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보접근권, 자기교육, 독서를 통한 여가활용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는 수행자를 안전하게 수용하여 교화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그 사명이므로, 교도소의 안전위주의 운영정책은 위에 언급된 기

본권의 보장과는 상호 충돌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알 권리, 정보접근권, 교육권 등과 같은 수행자의 기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정보원인 교도소도서관의 운영도 사회의 일반도서관과는 다른 취급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도서관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도소의 기본 목적과 방침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직에게 부여되는 기본정신, 기본 정책, 전문직 윤리, 전문적 기준 등을 따를 것인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에 의한 정보접근권의 보장은 교도소의 안전 정책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도소도서관은 그 특성을 살려 기본정책의 수정하여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도서관은 특수한 환경 즉 교도소와 수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규율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에서 수행자에게 도서관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한 여건의 이용자인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를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교도소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수행자 집단이므로, 수행자의 특성 및 그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그들의 능력과 관심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들의 요구에 상응한 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인성, 지식, 경험 등의 모든 면에서 일반

31) Stevens 1995, 73

32) Maryland Correctional Education Libraries, 2002, *Directory of State Prison Librarians* 1982년 ASCLA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Resolution on Prisoners' Right to Read가 채택.

사회인과 다를 수 있으며, 바깥사회의 구성원과 다른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문맹률 및 학습장애율이 높으며, 학교에서의 중도 탈락율도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불충분한 직업 훈련, 높은 비율의 정신질환과 정서적 불안정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sup>33)</sup>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본교육 내지 독서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도 많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여 본 경험이 별로 없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현행 수감제도의 목적, 수형자집단의 규모와 구성, 수형자의 요구 및 도서관에서 수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봉사 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자유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서 흥미와 정보요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오락용 독서만이 아니라 수감 중 혹은 출소 후에 대비하여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줄 정보에 대해서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sup>34)</sup> 또한 그들은 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 일정기간 수감됨으로써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요구를 지닐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도소도서관은 수형자의 기본적 요구 즉 교도소의 규정과 절차에 관한 정보,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지속하기 위한 정보, 직업기술에 관한 정보, 교육정

보, 교화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및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독자적 독서, 오락을 위한 독서, 사회복귀에 관한 정보 등 그들의 요구에 상응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sup>35)</sup>

교도소 도서관이란 어떤 이유에서든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들은 과거의 그리고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므로 현재 비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더라도 사회에 의하여 주어지는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일반 시민이 공공도서관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봉사를 수형자들은 교도소도서관에 의하여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그래서 1980 년대에 많은 교도소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과 비슷한 프로그램과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왔다.<sup>37)</sup> 수형자들에 대한 충분한 도서관 봉사를 하려면 일차적으로는 교도소 내에 설치된 도서관에 의하여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다양한 요구가 교도소 도서관에 의하여 충족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교도소에 대해서까지 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일찍부터 ALA, IFLA, PLA 등과 같은 전문직단체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즉 ALA<sup>38)</sup>는 공공도서관이 그 지역 내에 소재한 교도소의 수형자에게 도서관 봉사를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UNESCO<sup>39)</sup>

33) Open Society Institute, Criminal Justice Initiative, 1997, *Research Brief: Education as Crime Prevention Providing Education to Prisoners*, Occasional Paper Series, No. 2, September

34) Sandra Souza, 1989, "Real Libraries, Real Librarians", *Wilson Library Bulletin*, October, 37-38

35) ALA 1992, 11-12

36) Cheeseman 1978, 117

37) Rubin & Souza 1989, 48

38) ALA, ALA Policy Manual 제 52의1 (Service to Detention Facilities and Jails)

도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이 교도소의 수형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봉사과 자료를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Public Library Association<sup>40)</sup> 역시 공공도서관이 교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즉 소외자 및 사회내의 비정상인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교화기관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이 교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소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성문법에서도 공공도서관이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제 351조는 공공도서관봉사가 수감시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시행령은 '교도소에서 복무 중인 자'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봉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Home Office Prison Department가 주축이 되어 교도소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폭넓은 제휴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를 통해 수형자들은 일반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에 관

한 자료에 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도소도서관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report들은 이미 공공도서관이 교도소도서관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료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sup>41)</sup>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 주, 뉴욕 주, 뉴저지 주, 캘리포니아 주 등에 소개한 공공도서관들 역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교도소도서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다.<sup>42)</sup>

### 3. 교도소도서관과 교화교육

전술한 바와 같이, 교도소의 교화교육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있지만, 교육형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도소들은 수형자에 대한 교화교육을 가장 기본적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화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교도소도서관이다. 교도소도서관은 일찍부터 교화교육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19세기에 이미 교도소도서관이 정신적 면에서나 행동적 면에서 수형자를 교화시키기 위하여 도덕적 서적과 종교적 경전 등을 제공하였다. 영국에서 최악의 교도소 중의 하나로 지칭되던 Norfolk Island off Australia의 소장으로 있던 Alexander Maconochie는, 수형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39)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및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 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2001

40) Public Library Association, 1979, The Public Library Mission Statement and Its Imperatives for Service

41) W. J. Murison, 1988, The Public Library: its Origins, Purpose and Significance, Clive Bingley, 3rd ed. 196-197

42) Rubin & Souza 1989, 48

을 운영하면서 독서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독서를 적극 권장하였다.<sup>43)</sup> 미국에서는 1870년 Cincinnati에서 개최된 National Prison Association에서 “Declaration of Principles”가 공표되어 종교와 교육이 교화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효력을 지닌다고 천명되었다. 이는 교도소 개혁론자들에게 수형자에 대한 종교적, 교육적 훈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종교적, 교육적 발전을 위해 수형자에게 독서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영국의 도서관협회는 1997년에 발표한 지침에서,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도소가 교화교육을 위한 적극적 체제로 운영하려면 교도소도서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44)</sup>

교화교육에 주안을 둔 교도소 운영을 하려면 교화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사회학적, 교육학적, 치료적 배려에 적합하도록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빈약한 여건 하에서 교화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을 변화시켜 세상으로 되돌려 보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곤란하다”고 까지 주장되고 있다.<sup>45)</sup> Stevens<sup>46)</sup>는 교화교육을 위한 교도소도서관의 잠재력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교도소도서관이 처한 독특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결여,

교도소도서관이 단순히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불과하다는 편견, 교도소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도서관업무와 교화교육업무의 통합운영의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다.

### 3. 1 교도소도서관 교화교육의 의의와 효과

교도소가 수형자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한 것은 독서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교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도서관은 종합적 접근이 가능하며 교도소의 각종 교화교육 운영과 통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교화교육에 있어서 도서관봉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받게 된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화교육활동은 도서관의 지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조직하여 실제로 수행하려면 교육담당 부서는 도서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영국도서관협회는 교도소도서관지침 제 9항에서,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즉 공식적 교육, 개방교육, 독자적 학습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서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도소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문맹퇴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특히 독서기술교육 프로그램이 범죄방지에 훨씬 효과적이었고 또한 재범율을 경감시키는데도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교육이 수형자에게는 물론이고 교도소 운영자 및

43) Wilhelmus 1999, 2

44) Library Association 1997

45) Stevens 1995, 22-23

46) Stevens 1995, abstract

직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sup>47)</sup> 매서츄세츠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수형자들은 교도소에 도서관이 없었더라면 자기교육은 거의 없었을 것이고 무료한 생활로 인하여 교도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조사대상자의 84%가 응답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도서관 이용의 효과로서, 공부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의 제공, 개인의 선택 기회의 제공, 직원 또는 다른 수형자와 건설적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간 등의 제약 없이 자발적 학습기회의 제공 등을 들고 있다.<sup>48)</sup> 또한 Monroe County Correctional Center와 Monroe County Public Library가 공동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에서도 수형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나태하거나 권태로움으로 탈출할 수 있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아성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sup>49)</sup>

반면에, 도서관자원의 부족, 수형자의 도서관 이용능력 및 독서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 기능을 부인하는 입장도 있지만,<sup>50)</sup> 기본적 교육자원으로서의 도서관이용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다.

### 3. 2 교도소도서관 교화교육의 종류와 내용

국제기구·전문직단체·법령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교도소는 수형자에게 적절한 교

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교도소도서관은 이러한 교화교육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Stevens는 교화교육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로, 교육부서에 의하여 교과과목으로 채택된 분야, 수형자들의 지원요청 내지 정보요구가 용이한 것으로 인식되는 분야, 그리고 수형자들의 수준 높은 동기에 의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 등을 예시하였다.<sup>51)</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도소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수행할 수 있는 교화교육을 문자해독교육, 개방교육, 독자적 학습, 고등교육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 3. 2. 1 문자해독 교육(literacy)

교도소에는 문자해독능력이 전혀 없거나 혹은 낮은 수준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불과한 수형자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결여는 범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문자해독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지속성을 갖고 그의 모든 삶과 행동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자해독 능력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초보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력의 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노출하길 꺼려할 것이고, 대안으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도움을 얻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

47) Open Society Institute 1997, 6-8

48) Souza 1989, 38

49) The MCPL Jail Project

50) Stevens 1995, 171-172

51) Stevens 1995, 172-173



도소도서관의 사서가 직접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는 수행자가 다른 수행자의 문자해독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자원봉사자로 교육에 참여하려는 수행자에 대해 도서관에서 훈련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도서관에서는 문맹 상태에 있는 수행자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도소에 대한 긍정적 홍보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봉사자인 수행자들이 자존감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맹은 아니지만 독서능력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수행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도서관은 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즉 그들의 독서능력에 맞는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주면 이를 대출하여 독서하게 됨으로써 독서능력의 증진과 그 밖의 다른 기술도 증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독서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사전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어휘력을 증강시킬 수 있고, 또한 사자에게 질문하여 도움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내지 도서관자료에 대한 적극적 이용을 습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이들이 자유롭게 도서관 및 사서에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3. 2. 2 개방교육(open learning)

개방교육이란 수행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또는 공식적 학습에 참여할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 교육용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독자 스스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그러므로 개방교육에서는 수행자 스스로 자신의 지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통제와 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교육을 위하여 그들은 필수적으로 교도소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며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맞춘 속도로 학습하게 된다.

개방교육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운데 크게 발달되고 있는 분야이다. 교도소도서관에 소장된 각종 자원 및 교도소 사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개방교육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므로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개방교육협회는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자료와 훈련된 직원을 두고서 개방교육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sup>52)</sup> 인적, 물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여건에 있는 교도소도서관은 개방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의 외부 자원에 대해서도 수행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개방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원에 접근하여 수행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구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자'로서 작용을 해야 개방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개방교육은 강압을 받지 않으면서 수감 기간을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관심

52) Stevens 1995, 489

사를 개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학력 혹은 학력이 낮은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수단이다. 특히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도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수형자 또는 교도소 병원의 입원자 등 공식적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는 수형자들도 감방에서 개방교육을 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개방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대출받아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이용하므로 위에 언급된 안전상의 장애 및 제도상의 장애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접근 및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3. 2. 3 독자적 학습(Self-directed study)

교도소의 기본 목적이 수형자를 교화교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있으므로, 교도소는 수형자의 교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많은 수형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교육용 자료와 교과과정의 부적절성, 교육 참여 동기의 불순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으며, 그 대신에 자기교육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교도소도서관 장서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sup>53)</sup> 도서관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정보의 입수나 교환에 대해 많은 통제를 받는 교도소환경에서, 도서관에서만 수형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제한

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적 학습은 자신감을 얻으면서 자기훈련을 할 수가 있다. 한 수형자는 “나의 시간에 스스로 독서를 함으로써 자신이 보다 나은 사람으로 느껴졌다”고 하였고, Malcolm X는 “내면적 지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한 학습과 독서가, 공식적 교육 후에 얻어지는 수료증이나 자격증 취득 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술회하였다.<sup>54)</sup> 교도소도서관을 이용하면 수감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도피하여 정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료함을 극복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료의 유혹에 빠질 우려도 감소되고, 상습범들로부터 범죄에 오염될 위험성도 적어지게 된다.<sup>55)</sup> 그러므로, 자기개발을 위해 수형자 스스로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독자적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도소도서관은 학습 관련 자료와 도구를 충분히 갖추어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자적 학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지라도 자녀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수감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교도소에서는 자녀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책을 함께 읽는 아버지(Fathers sharing books)”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아동도서를 수집하여 수형자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큰소리로 책읽어

53) Stevens 1995, 156-157

54) Stevens 1995, 159-160

55) Murison 1988, 196

주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수형자들을 위하여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도서관에서는 도서와 교육용 장난감 등을 비치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을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그들의 자녀에게 보내도록 허용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원하는 많은 대기자들이 있다.<sup>56)</sup>

### 3. 2. 3 고등교육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주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데 불과한 사람도 있지만 고학력인 사람도 있다. 일정한 학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기간 동안 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는 수형자들 중에는 그 기간동안 고등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수형자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후원을 받은 학위과정이 교도소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 여자교도소(Indiana Women's Prison)는 Martin University의 Lady Elizabeth Campus로 되어, Martin University에 의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수형자는 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그 대학교에서 수여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 Lady Elizabeth Campus에서 개설된 강좌는 주로 저녁시간에 교도소 내 교육 빌딩의 교실에서 실시되며, 교도소 직원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호를 맡으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Indiana 주에서의 이와 같은 고등교육은 법적 근거(Indiana Public Law 240-1991(ss2) 하에서 주어지고 있다. 이 법은 교화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또한 출소 후에 범죄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데서 출발하였으며, 수형자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 프로그램과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감형을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sup>57)</sup>

수형자에게 고등교육을 실시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교도소환경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출감 후에 취업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재범율을 감소시키게 되어 수형자 개인과 가정 및 국가사회에 모두 유익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1965년 교도소 수형자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자금보조를 요청할 경우에 이를 허락하는 법(Title IV of the Higher Education Act)을 통과하였다. 그 후 교도소들이 고등교육을 실시하여 재범율을 경감시켰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4년 미국의회는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를 제정하여 모든 재소자가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준법적 생활을 하는 과세자의 비용으로 수형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할 수 없

56) Vibeke Lehmann, 2000, "The Prison library: a vital link to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recreation", *Education Libraries*, 24.1, 5

57) Wilhelmus 1999, 114-20

다는 것이다.<sup>58)</sup>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도소의 도서관은 학과관련 자료, 교과서에 대한 복본 제공, 연구정보 및 교수의 과제에 관한 정보 등 교과과목을 지원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공식적 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활발한 참고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등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교과과목 관련 자료를 수형자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에 의해 폭넓게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많은 교도소도서관에서는 오늘 날 수형자의 사용을 위하여 multimedia자료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꺼려한다. 교도소 직원들 중에는 수형자에게 현대기술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면 교도소 운영상 통제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매우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대학 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우에 필요한 장서를 구비할 예산과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교과과목 학습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한 장치(예: password, external modems 등)를 설치한 후 이용하도록 제한적 허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sup>59)</sup>

#### 4. 결론 및 제언

교육형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행형제도가 법률상으로 확립된 지 40년 이상이 경과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도소는 기본권이 가장 경시되는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교도소란 법원에 의해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단순히 격리하여 수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교화교육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화교육이 수감기간 중에 이루어진다면 출감 후에도 범죄의 세계와 단절하고 준법적 생활을 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형자 중에 재범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재범율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도소들은 교화교육의 기치 아래 정신교육과 학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우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 1988년부터 수감생활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범죄악습의 감염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열람'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수형자 개인이 구입하거나 영치된 개인도서와 교도소 교무과에 비치된 약간의 관용도서만이 독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수형자 스스로 자신이 읽고 싶은 도서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읽을 거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도서열람'의 허용이란 다만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58) Open Society Institute 1997, 1-14

59) Brenda Vogel, 1995, "Ready or Not, Computers are here," *Corrections Today*, 57, 6, August, pp. 160-162, Quoted in Wilhelmus 1999, 6

수형자의 기본권 즉 교육을 받을 권리, 알 권리,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기구와 전문직 단체들은 교도소에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하고 교화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성문법으로 교도소도서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한된 여건 하에 있는 교도소도서관을 수형자들이 이용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 도서관(특히 공공도서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교도소 당국에 의한 교화교육을 받는 외에, 수형자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교육(문자해독 교육, 개방교육, 독자적 학습, 고등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도소 중에는 도서관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시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미국, 영국과 같이 교도소도서관을 설치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교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교도소도서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시행령에 교도소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있고, 행형법과 동시행령 및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등에 '도서 열람'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을 뿐 교도소도서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국제기구나 전문직 단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도소도서관은 수형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도서관과 도서관자료 내지 도서관직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한 한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도소도서관이 교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수형자들이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기대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므로, 충분한 공간과 시설, 장서를 갖추고 전문직원에 의해 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도소도서관이 설치되어 교화교육을 위한 여건을 갖추더라도, 다양한 수형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외부자원으로 부터의 협력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도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교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형자 집단에 대한 분석과 집단별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신교육, 학과교육, 기타 교화활동 등을 형식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화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도소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형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그들이 수감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교도소가 훌륭한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도, 수형자들에게는 감방에서 할 일없이 보내야 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교도소 환경 하에서 적절한 도서관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교화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수감기간 동안에 교도소 및 교도소도서관에 의한 교화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응규. 2002. 『한국교정시설의 발전과 현대화』. 법무부 기획관리실.
- 김증한 편. 1999. 『法律學辭典』. 제4 전정판. 서울: 법문사.
- 남상철. 1997년. 『교정의 역사적 궤적과 발전적 전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許柱旭. 2002. 『矯正學』. 서울: 法文社.
-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4. *Code of Ethics*.
-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2002. *Declaration of Principle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6. *ALA Policy Manual*.
-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 Division of The ALA. 1992. *Library Standards for Adult Correctional Institutions*.
-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1982. "Resolution on Prisoners' Right to Read", Maryland Correctional Education Libraries, 2002, *Directory of State Prison Librarians*.
- Cheeseman, Margaret. 1978. "Prison(Correctional)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ited by Allen Kent, vol. 24, Marcel Dekker, Inc.,
-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1989. *Recommendation No. R(89) 12 : Education in Prison*.
- IFLA. 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 Kaiser, Frances E., 1995.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Prisoners*, 2nd ed., IFLA Headquarters.
- Lehmann, Vibeke. 1999. *Prison librarians needed: a challenging career for those with the right professional and human skills*, 65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Bangkok, Aug. 20-28.
- Lehmann, Vibeke, 2000, "The Prison library: a vital link to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recreation", *Education Libraries*, 24(1): 5-10.
- The Library Association, 1997. *Guidelines for Prison Libraries*, 2nd ed.
- MacCormick, Austin H., 1931. "The Library as an agency of Education" *The Education of Adult Prisoners: Survey and a Program*, The National society of Penal Information, 150-179.
- Murison, W. J. 1988. *The Public Library: its Origins, Purpose and Significance*, 3rd ed., Clive Bingley.
- Open Society Institute, Criminal Justice Initiative, 1997, *Research Brief:*

- Education as Crime Prevention Providing Education to Prisoners*, Occasional Paper Series, No. 2, September
- Public Library Association. 1979. *The Public Library Mission Statement and Its Imperatives for Service*.
- Rubin, R. J. & Souza, S. J. 1989. "The Challenge Continues: Prison Librarianship in the 1980s", *Library Journal*, 114(5): 47-51.
- Souza, Sandra. 1989. "Real Libraries, Real Librarians", *Wilson Library Bulletin*, 64(2) : 37-38.
- Stevens, Tony. 1995. *The Role of the Prison Library in the Reform and Rehabilitation Process*, Ph.D Thesis, Sheffield University.
- Steurer, Stephen J. & Smith, G. Linda. 2003. *Education Reduces Crime: Three-State Recidivism Study*, Correc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UNESCO. 1994.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0. *Resolution 1990/20*.
- Wilhelmus, David W. 1999. "A new emphasi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5(2): 114-20.